#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2. 3. 23.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3월 4일 영등포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3월 6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88회(임시회)제1차위원회(2002년 3월 14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추진갑)

가.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명칭변경 등 개정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이 법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함(안 제명)
(2)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으로,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함(안 제1조)
(3)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대상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변경함(안 제3조)
(4)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5) 의료보호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제1항)
(6) 제9조의 결손처분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함(안 제9조)
(7) 제9조의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함(안 제9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민창규)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우리구 조례의 기관명이나 직명 등을 모법에 맞게 하는 것이고, 의료보호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구에서는 대불금과 환불금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또한 중복규정된 결손처분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시행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의 안 번 호 | 232 |
|---|---|

제출년월일 : 2002. 3. 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2001.5.24. 법률 제6474호)으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명칭변경 등 개정된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이 법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종전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함(안 제명)

나.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으로,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함(안 제1조)

다.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대상자"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변경함(안 제3조)

라.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마. 의료보호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7조제1항)

바. 제9조의 결손처분 규정은 의료급여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함(안 제9조)

사. 제9조의2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함(안 제9조의2)

##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의료급여법(2001.5.24. 법률 제6474호),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필요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으로,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를 "급여대상자"라 한다)로,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의료급여기금(……)……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제3조(세입과 세출) …… …… 의료급여법의 …… 의료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 …… 의료급여비 …… …… |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호담당주사로 한다<개정 1992.12.6. 1999.10.8><br>②생 략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 …… …… ……<br>②(현행과 같음) |
| 제7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5.22. 1999.10.8><br>②생 략 |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br>②(현행과 같음) |
| 제9조(결손처분)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br>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br>2. 의료보호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br>3. 대불금상환 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동장의 확인과 구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 제9조(결손처분)<br>(삭 제) |
|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의2(보고 등)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